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대폭 확대

-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기술표준원은 2003. 8. 21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파스,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등 6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행 29품목에서 35품목으로 확대 하였다.
  - 현재 안전검사대상인 공산품에 대해서도 검사 범위를 확대시켜 인라인스케이트용 안전모, 전문업소용 헬스기구, 원예용 사다리는 앞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 위해(危害) 우려가 적은 보냉용기는 안전검정대상으로 변경 하였다.
  -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으로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를,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썩크대, 라텍스 침대를 추가 지정 하였다.
-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 출고(통관)전에 의무

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시, 안전검정을 실시하는 공산품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제조·판매업자에게 표시기준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산품

- 또한,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 물놀이기구 등의 공산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첨부 1 >

###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조정 내용

1. 추진배경
  -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확대 등으로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요가 확대되

는 추세

-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증가
- 인라인스케이트 등 스포츠·레저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증가
-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추진경과

- 조정 대상 품목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조사대상기관 : 소비자보호원 등 184개
- 실태조사
  - 외국의 안전기준 및 관리 현황 / 국내 안전사고 현황 조사
  - 관련업체 회의 및 유통업소 방문을 통한 업계의 의견 수렴

3. 조정(안)

조정(안)		공산품명	사유
안전 진 검 사	신규 추가 (3품목)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은 품목.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안전관리.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안전규정 준수를 권고
		자동차용 경기표지판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율이 높은 품목. 유럽·미국은 강제규정으로 안전관리.
		미끄럼방지 타일	가정내 욕실 등에서 노약자의 안전사고율이 높은 품목. 미국은 강제규정으로 안전관리.
	검정 → 검사 (3품목)	유아용 의자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은 품목.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미국·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안전관리.
		쇼핑카트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은 품목.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미국·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안전관리.
		크레용·과스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삼켰을 때, 납 등 중금속을 섭취할 우려가 큼. 유럽·미국은 강제규정으로 안전관리.
	검사범위 확대 (3품목)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노우 스포츠용 추가)	인라인스케이트, 스키 등 새로운 레포츠를 즐기는 국민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안전사고 다수 발생.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미국·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안전관리



조정(안)		공산품명	사 유
안전 검사 사	검사범위 확대	헬스기구 (현행 가정용에서 업소 용을 포함한 모든 헬스 기구로 확대)	가정에서 헬스기구를 이용하기 보다 전문 헬스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헬스기구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헬스기구 사용중에 소비자 안전사고 다수 발생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미국은 임의규정으로 안전관리.
		사다리 (원예용, 도배용 추가)	원예용은 3발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일반사다리보다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음. 도배용은 상판이 늘어난 변형된 일반사다리의 일종으로 일반사다리와 동등한 안전관리 필요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미국·일본은 임의 규정으로 안전관리.
	삭 제 (1품목)	보냉용기	보냉용기는 물·얼음 또는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증균속 용출의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안전검정대상으로 변경. 주요선진국에서도 안전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본은 진공보냉병에 한하여 임의규정으로 안전관리
안전 검 정	신규 추가 (2품목)	스케이트 보드	안전 위해의 우려는 있으나, 수요자가 적은 품목. 유럽은 강제규정으로 미국·일본은 임의 규정으로 안전관리.
		침대 매트리스	안전사고의 우려는 있으나, 사고 빈도가 높지 않음. 유럽·일본은 매트리스의 안전성 및 방염성에 대해 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방염성에 대해 강제 안전기준을 적용
품질 표 시	신규 추가 (2품목)	씽크대	벽장의 추락 또는 문짝 탈락으로 인한 안전위해가 발생되므로 벽장에 적재 하중 등의 표시 필요
		라텍스 침대	인조 제품이 천연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성분 및 함량 등의 표시 필요

< 첨부 2 >

**공산품안전관리제도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가. 안전검사제도

- 개요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검사대상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유모차 등 29개 공산품

분 야	안전검사대상공산품 (29품목)
섬 유	등산용 로프, 가속눈썰, 스포츠용 구명복
화 학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경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금 속	가정용 압력냄비·가정용 압력솥,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생활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백백이,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공기주입물놀이기구·공기주입보우트,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젓병·젓꼭지, 비비탄총, 킥보드, 이륜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 고정식자전거,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 보온·보냉용기

-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 또는 단체
- 사후관리 : 검사기관이 년 1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 불법·불량제품 행정 처분
  - 시·도지사 :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리콜명령

나. 안전검정제도

- 개요
  -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검정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검정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없음.



분 야	안전검정대상공산품 (30품목)
섬 유	유해물질합유섬유제품(가속눈썹을 제외한다), 텐트, 반사 안전조끼, 양탄자
화 학	유해물질합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를 제외한다),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장관지, 물휴지, 수경, 불꽃놀이제품, 양식용 부자, 자동차용 타이어
기 계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토 건	물탱크
생활용품	유해물질합유 학용품, 유아용 의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식탁용품, 주방용품, 간이빨래걸이, 가죽제품, 안경테, 선글라스, 우산, 양산, 쇼핑카트, 보안경(TV용), 스키용구(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에 한한다), 비작동완구(유아용달랑이, 백백이, 치아용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는 제외한다)

- 검정대상
  -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이외의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합성세제 등 30개 공산품
- 검정기관 :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 또는 단체
- 사후관리 : 안전검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
- 개요 (법 제8조)
  -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



3. 품질표시 (임의제도)

분 야	품질표시대상공산품 (4개 분야)
섬유제품	의류, 한복, 수의류 그밖의 섬유제품(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울, 넥타이, 이불, 요, 가방)
화학제품	화장비누, 표백제, 화장지(두루마리 및 평면), 1회용기저귀(유아용, 성인용), 합성수지계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연질염화비닐(PVC)호스, 합성수지계필름
생활용품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안경테, 선글라스, 우산·양산, 가구
귀금속품	목걸이, 반지, 수저, 그밖의 귀금속가공상품